

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(약칭: 112신고처리법)

[시행 2024. 7. 3.] [법률 제19870호, 2024. 1. 2., 제정]

경찰청 (치안상황과) 02-3150-2646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 ·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 · 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·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112"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2를 말한다.
2. "112신고"란 범죄나 각종 사건 ·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그 피해자 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이 112를 이용한 음성,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, 영상,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의 책무) ①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112신고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·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누구든지 장애 · 언어,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 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 ·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 ·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.

제2장 112신고의 접수 · 처리 등

제6조(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 · 운영) ① 경찰청장, 시 · 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(이하 "경찰청장등"이라 한다)은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 · 처리와 이를 위한 112신고 정보의 분석 · 판단 · 전파와 공유 · 이관, 상황관리, 현장 지휘 · 조정 · 통제 및 공동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 · 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112신고의 접수 등)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받으면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계 · 위력 ·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 · 처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1항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112신고에 대한 조치) ① 경찰청장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경찰관을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위험 발생의 방지, 범죄의 예방 · 진압,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찰관은 해당 112신고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.
-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사람의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 ·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,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 · 건물 ·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.
- ④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 · 재해,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· 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⑤ 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입 등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,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치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는 제1항,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나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11조의2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
- 제9조(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)**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 처리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, 범죄의 예방 · 진압,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기관은 해당 112신고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대응 · 협력 요청, 관계 기관의 조치, 수사기관 인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0조(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)** ① 국가는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신고를 한 사람(이하 "112신고자"라 한다)이 범죄(이미 행하여졌거나 진행 중인 범죄와 눈앞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피해자, 범죄를 목격한 사람, 그 밖에 각종 사건 ·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②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12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, 112신고자의 이름 · 주소 · 성별 · 나이 · 음성과 그 밖에 112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유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정보(이하 "112신고자 정보"라 한다)를 수집 ·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112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
 2. 112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
 3.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112신고자 정보를 112신고 접수 · 처리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집 · 이용 또는 제공하는 112신고자 정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

- 제11조(출동 현장의 촬영 · 관리)**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찰차 등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 · 이용 · 폐기의 기간 · 방법 ·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

- 제12조(112신고의 기록 · 보존 등)**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접수 · 처리 상황을 제13조에 따른 112시스템에 입력 · 녹음 ·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.
 ②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 · 처리 상황의 기록 방법 · 범위, 보존기간, 관리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112시스템의 구축 · 운영 등

- 제13조(112시스템의 구축 · 운영)**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 · 처리, 112신고 정보의 공유 · 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(이하 "112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 · 운영하여야 한다.
 ② 제1항에 따른 112시스템의 구축 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4조(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)** ① 경찰청장 및 시 · 도경찰청장은 급박한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의 보호를 위한 112신고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 정보 등의 공유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112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.
 ② 경찰청장 및 시 · 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 기준 · 방법 및 절차, 관계 기관, 연계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보칙

- 제15조(교육 · 훈련 및 홍보)** ① 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 ·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 ②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서비스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·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6조(112신고자 포상)**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 ·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 · 기준 ·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벌칙

- 제17조(벌칙)**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제18조(과태료)**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 ·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 · 물건 등의 일시사용, 사용의 제한, 처분 또는 토지 · 건물 · 배 또는 차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4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등이 부과 · 징수한다.

부칙 <제19870호, 2024. 1. 2.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